
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
일부개정법률안(김현정의원 대표발의)

검 토 보 고

I. 주요내용

- “대차대조표” 용어를 “재무상태표”로 변경함(안 제9조, 제18조, 제31조 및 제38조)

II. 검토의견

개정안의 체계와 자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,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음.

(수석전문위원 정 환 철)